(별지 제1호서식)

조합원 가입 신청서

(자연인용)

성 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가구원수		
주 소					전화번호		
거 소					휴 대 폰		
인수예정출자 (가입)금	좌 천원	생년월일 (음,양)			결혼기념일 (음,양)		

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				
농업종사구분	농업경영주( ) 가족원인 농업종사자( )			
자격확인 서류	경영체등록확인서( ) 농지원부( ) 축산업등록증( ) 인삼경작확인서( ) 기타( )			
사업장소재지			임차기간 (사업장 임차 시)	~
영농·축산 현황	논	㎡	밭	㎡
	소	두	돼지	두
	시설원예	㎡	꿀벌	군
	채소,과수,화훼	㎡	인삼	㎡
	곤충	( ) 마리	잠종(2만립)	상자
	기타	㎡,두,수	농업종사일수	1년 중 일
다른조합에의 가입유무	조합명:		그 조합과의 관계	

본인은 농협법 및 귀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며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고자 하니 가입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가입신청인 (인)

자격확인	상기 신청인은( )영농회(축산계,작목반,리·동) 관내에서 농업(축산업)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 (시·읍)면 (동)리 영농회장( ) (인) **하북농업협동조합장 귀하**
고지사항	< 조합원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(첨부) 참조 >

주) 1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자경증명서, 축산업등록증 사본, 인삼경작 확인서 등 첨부

2. 자격확인은 사업장 소재지 영농회장, 축산계장, 작목반장, 농지위원, 리·동장

등에게 받음. 다만, 농업인 확인서류 및 현지실태조사 결과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

조합원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

설 명 내 용	확인
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	□
② 농축협의 자본금이 납입출자액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을 감액하여 환급합니다.[농협법 제 32조, 제107조, 제112조]	□
③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분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, 일부 금액을 분할 환급할 수 없습니다. [농협법 제31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3조]	□
④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, 출자금 환급은 농축협의 당해연도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승인일 (익회계연도)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. [농협법 제31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3조]	□
⑤ 배당금은 매회계연도 결산총회 후 농축협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결정되며, 회계연도 중 탈퇴시 이용고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[정관 제148조제1항, (품목농축협 정관 제146조제1항)]	□
⑥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[농협법 제21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3조]	□
⑦ 주소, 전화번호 등 조합원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조합원 자격 변경, 상실 시에는 즉시 농축협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	□
⑧ 사업미이용 및 의무불이행 등의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제명 될 수 있습니다. [농협법 제30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2조]	□
⑨ 조합원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한됩니다.	□

고 객 설 명 확 인

위 설명내용을 잘 들었고, 농축협 출자금은 (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), 농축협이 자본잠식 될 경우에는 (감액된 출자금)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, 환급청구는 (탈퇴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 승인일)부터 청구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하였습니다.

. . . (인, 서명)

담 당 직 원 확 인

(하북농업협동조합 ( )은(는)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( )에게 설명하였습니다.

. . . (인, 서명)

※ 원본은 농축협 보관, 사본은 가입신청자에게 교부